

# 2022년 종료과제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연구정산팀, '24. 12. 17.)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대상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종료과제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로 현재 적용 규정과 일부 다를 수 있음

## 1. 주요 지적사항

구 분	주요 지적내용
연구시설·장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공용 사용공간의 전기공사 비용 지출</li> </ul>
연구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단 홍보를 위한 비용 지출</li> </ul>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활동비로 참여연구자가 아닌자에게 급여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비 중복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의제목과 실제 구매항목 불일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참석자 회의에 따른 회의비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 변경 승인 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소요 비용 지출</li> </ul>
보안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의 3%를 초과하여 보안수당 집행</li> </ul>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연구수당 중복 집행</li> </ul>

## 2. 세부내용

### ①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 관련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 위반내용

- 기관의 공용(또는 타 사업비로 공간을 마련한) 사용공간의 전기공사 비용을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에 따라 기관의 공용 공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 집행이 불가하며 공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접비로 집행하여야 함

### ② 연구재료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 관련규정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 □ 위반내용

- 연구단은 행사 전시 모형 제작 및 방문자를 위한 체험 키트 제작 비용을 연구재료비(직접비)로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에 따라 연구단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 ③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 관련규정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략-
- ⑥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위반내용

- 참여연구자가 아닌자(영리기관 계약직 직원)의 급여를 연구활동비로 지급함
- 인건비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건비 계상 가능 여부 확인 및 제6항에 따라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사용 기준 별지 3호) 제출이 필요함

#### ④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 관련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2. 주류 등 유희성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위반내용

- 참여연구자의 출장비를 중복하여 계상함(원소속기관과 타기관 연구과제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에 따라 **동일 비용 2회 이상 중복 집행은 불가함**

#### ⑤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 관련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 위반내용

- 결의 제목과 실제 구매항목이 불일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에 따라 **실제 집행내역에 대한 증명자료 입증이 필요함**

## ⑥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 관련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 위반내용

- 내부 참석자만(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회의 참석 및 회의비를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의비는 외부 참석자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⑦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 관련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위반내용

-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으로 에어컨을 구매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에 따라 영리기관은 협약시 연구실운영비사용계획서 제출 후 사용이 필수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사전 승인이 필요함

## ⑧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 관련규정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 다. 홍보전문가 양성
  -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 □ 위반내용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은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구분하여 사용이 필요함

## ⑨ 보안수당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 관련규정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216)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함

□ 위반내용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를 초과하여 보안수당을 지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의2 및 매뉴얼에 따라 보안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함

⑩ 연구수당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 위반내용

- 비영리기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에 따라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⑪ 연구수당 사용 기준(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연구수당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대)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내용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 계상이 불가함